

# 미술계 학과 석사학위과정 졸업작품전 및 작품중심 학위청구논문 지침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대학원(이하“대학원”이라 한다)미술계 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졸업작품전 및 작품중심의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9. 9. 26.)

**제2조(명칭)** 졸업작품전의 명칭은 석사학위청구작품전(이하 “작품전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작품전 계획)** 발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품전 계획을 수립하여 학과장 주도 하에 작품전을 개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작품전 공고)** 발표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품전 개최를 작품전 1주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작품전 시기 및 장소)** ① 발표자는 졸업예정학기 최소 1학기 이전(통상적으로 제3학기)에 작품전을 개최하여야 한다.

② 작품전은 광역시 이상의 공인된 장소에서 5일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심사위원·평가 및 결과보고)** 학과장은 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 학생 1인당 3명의 심사위원(지도교수 포함)을 선정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장은 작품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.

**제7조 (학위청구논문제출)** ① 미술계 학과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7장에 의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이 지침에 의한 작품중심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(개정 2019. 9. 26.)

② 작품중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 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은 작품전에 발표한 작품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.

③ 작품중심 학위청구논문의 분량은 800자 원고지 10매(도록부분 제외)이상이어야 한다.

**제8조(전시작품 규모 및 도록 제작)** ① 전시작품의 규모는 아래와 같다. 다만, 대학원 학칙 제7장에 의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하는 자의 전시작품의 규모는 아래의 1/2이상의 분량으로 한다.

② 발표자는 5점 이상의 천연색 작품사진이 수록된 개인의 도록(팸플릿)을 제작·배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 3. 1.)

| 학 과       | 전 공       | 규 모(작품 중심) 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|
| 미 술 학 과   | 서 양 화     | • 크기와 수량의 제한없이 총계 1000호 이상  |    |
|           | 동 양 화     | • 크기와 수량의 제한없이 총계 1000호 이상  |    |
| 디 자 인 학 과 | 시 각 디 자 인 |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.<br>• 그래픽디자인 15점 이상<br>• 디지털영상콘텐츠디자인 4분 분량의 영상물 1점 또는 프린트물 15점 이상 |    |
|           | 공 예 디 자 인 |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.<br>• 염직공예 8점 이상  |    |

| 학 과     | 전 공       | 규 모(작품 중심)  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|--|----|
|         |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공예 8점 이상</li> <li>• 금속공예 8점 이상</li> <li>• 도자공예 8점 이상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| 산 업 디 자 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디자인 5점 이상</li> </ul>  |    |
|         | 패 션 디 자 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패션디자인 5점 이상</li> </ul>  |    |
|         | 텍스타일디자인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텍스타일디자인 8점 이상</li> </ul>  |    |
| 미디어아트학과 | 사 진 영 상   |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.<br>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진 15점 이상</li> <li>• 영상: 단편영화(다큐멘터리 포함) 15분 이상</li> <li>• 사진영상 5점 이상</li> </ul> |    |
|         | 영상애니메이션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영상 3분 이상</li> </ul>  |    |
|         | 뮤직테크놀로지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실용연주, 실용작편곡, 사운드아트분야의 2점 총30분 이내</li> </ul>   |    |

**제9조(재심사)** 작품전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기타)** 이 지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.(개정 2019. 9. 26.)

#### 부 칙

1. 이 내규는 1994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내규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내규는 200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
(경과조치) 2011년 3월 이전 입학자는 종전 내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6. 이 개정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7. 이 개정지침은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